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(정희용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14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. 19.

발 의 자 : 정희용 · 안철수 · 이달희
고동진 · 박충권 · 박준태
최수진 · 조승환 · 김성원
김선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농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, 농촌 인구의 고령화, 쌀소비량 감소 등 농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고려할 때,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요건이 되는 자경기간을 보다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직접 경작기간을 8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여 농업인에게 과도하게 장기화된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(안 제69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9조제1항 본문 중 “8년”을 “3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6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